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0,797,287	13,523,919
일반회계	380,580,360	11,417,411
특별회계	70,216,927	2,106,508
기타특별회계	70,216,927	2,106,50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74,396	392,232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45,409,630	1,362,28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2,696	13,281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200	12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26,788	6,804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498,681	164,960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560,536	166,816

제 2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6,086,47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